

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4. 20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2000. 4. 20
- 다. 상 정 일 자 : 2000. 5. 1(제8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김 종 철
- 나. 재정사유

-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11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- 다. 주요내용

- 감사 청구 주민수 (안 제2조)
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500명 이상으로 규정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11에 의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필요 요건을 제정기 위한 조례안으로써,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5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 해당되며 주민 감사청구의 취지나 운영상의 문제점등을 고려해볼 때 적당한 인원수로 생각됨.
-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등 제정절차상의 문제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"워안의결"

첨 부 :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

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0. 4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11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감사청구 주민수 (안 제2조)
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500명 이상으로 규정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11

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11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감사청구 주민수)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